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2. 20. 2013고단1878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서성목(기소), 임찬미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아모스(담당변호사 임은지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00,0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